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21
----------	-----

2016. 7. 11.(월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16년 6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7월 11일

(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조성재원을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한편,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삭제(안 제2조)
-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(안 제5조)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경형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2016년 12월 31일이 존속기한인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
- 관계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2016. 5. 31. 제1차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 연장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심의·의결하였으며,
-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해 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관계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법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바이오환경국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환경 분야 및 기금관리운용에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및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,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⑦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
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
3. 기금운용 결산보고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제10조 중 “2016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구성)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</u></p> <p>6. <u>기금의 운용 수익금</u></p> <p>7. <u>그 밖의 수입금</u></p> <p>제5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기 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<u>운용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 다)를 설치하여 운영하되,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기금구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삭제)</p> <p>5. <u>기금의 운용 수익금</u></p> <p>6. <u>그 밖의 수입금</u></p> <p>제5조(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<u>운영) ① -----</u> ----- ----- <u>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</u> <u>심의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, 부 위원장은 바이오환경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④ <u>위원은 환경 분야 및 기금관리운 용에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사람 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및 기 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,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</u></p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
2. 기금운용 결산보고
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제10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⑦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
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
3. 기금운용 결산보고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제10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기금운용심의위원회"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